

# 「평창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 1. 심사경과

-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2년 03월 07일, 평창군수 제출
- 회부일자 : 2022년 3월 16일 회부
- 상정일자 : 제274회 평창군의회(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2022년 3월 17일 상정·의결)

###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행정지원국장)

#### 가. 제안이유

평창군이 조성한 자연휴양림의 관리·운영을 위해 2011.7.15. 조례를 제정하여 운용해 왔으나, 2015.5.15. 일부개정된 이래 시설 사용료 등을 현실에 맞게 이를 조정하고 그간 개정된 관련 현행법과 조례에 따라 운영하면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 나. 주요내용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7 제1항에 의거 법 제21조의5 제1항에 따른 자연휴양림 등의 입장료, 시설사용료는 해당 자연휴양림등의 조성·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하도록 함에 따라 향후 물가상승을 반영하여 시설 사용료를 개선하여 안정적 수익구조화를 도모함.

- 효율적인 유지·관리 비용 등을 고려한 시설사용료 정비하고(조례 제6조 시설사용료) 관계법령 개정 및 운영에 따른 현행화 하고자 함.(조례 제13조 관리·운영의 위탁 등)

###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 김남섭)

- 본 조례안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평창군이 조성한 자연휴양림의 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과  
입장료·시설사용료 등을 현실에 맞도록 적정하게 조정하여,  
관계법령 개정에 따른 조항을 현행화 하는 것임.

- 주요내용은

안 제7조제1항제1호에서는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항을 현행화하였고  
안 제13조제1항에서는 관련 근거법령을 명시하는 등  
내용의 의미를 명확히 하였으며  
안 제20조제1항에서는 ‘평창군 수탁적격자 심사위원회’를  
‘평창군 자연휴양림 수탁적격자 심사위원회’로 변경하여  
의미를 분명히 하였음.

- 검토결과,

평창군이 조성한 자연휴양림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입장료 등을 변경하는 부분으로  
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의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붙임 평창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 평창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제1호 중 “제8조”를 “제9조의7”로 한다.

제1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부과한다”를 “부과할 수 있다”로 한다.

- ① 군수는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라 휴양림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휴양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격요건을 갖춘 법인·단체에게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제19조 중 “운영비 일부를”을 “운영비 등을”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수탁적격자”를 “자연휴양림 수탁적격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담당주사로”를 “담당팀장으로”로 하며,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2] 시설사용요금표(제6조 관련)

(단위 : 원)

| 시설명         | 구 분                                 | 비수기    |         | 성수기     | 비 고                       |
|-------------|-------------------------------------|--------|---------|---------|---------------------------|
|             |                                     | 평일     | 주말,공휴일  |         |                           |
| 주차료         | 경차                                  | 1,500  | 2,000   | 2,000   | 1대/1일                     |
|             | 소형(15인승 이하 승용차,<br>1톤이하 화물차)        | 2,000  | 3,000   | 3,000   |                           |
|             | 중형(16~35인승 승합차,<br>1톤 초과~5톤 미만 화물차) | 3,000  | 4,000   | 4,000   |                           |
|             | 대형(36인승 이상 승합차,<br>5톤 이상 화물차)       | 4,000  | 5,000   | 5,000   |                           |
| 야영장         |                                     | 10,000 | 10,000  | 10,000  | 1조/1일                     |
| 산림문화<br>휴양관 | 강당 184㎡                             | 70,000 | 100,000 | 100,000 | 4시간 초과시 시간당<br>20,000원 추가 |
|             | 세미나실 27㎡                            | 30,000 | 40,000  | 50,000  | 1일/1실                     |
| 숙박<br>시설    | 숲속체험관                               | 60,000 | 100,000 | 100,000 | 1일/1실                     |
|             | 숲속의집(카라반)                           | 70,000 | 110,000 | 110,000 | 1일/1개소                    |
| 다목적<br>운동장  | 1시간                                 | 15,000 | 20,000  | 20,000  | 숙박시설 이용객은 무료              |

1. 시설사용에 대한 1일 기준은 다음과 같다.
  - 숙박시설의 사용시간은 입실일(check-in) 14:00부터 다음일 (check-out) 12:00까지로 한다.
  - 야영장의 사용시간은 14:00부터 다음날 13:30까지이며, 입장시간은 21:00까지로 한다.
2. 주말이라 함은 금요일, 토요일을 말하며, 공휴일이라 함은 공휴일의 전날(연휴일 경우 마지막 공휴일의 전일까지)을 말한다.
3. 성수기는 매년 7. 15 ~ 8. 24까지, 비수기는 그 외의 기간을 말한다.
4. 이용시간 종료 후 퇴실이 지체될 경우 다음과 같이 이용료를 추가 징수한다.
  - 2시간 이하 지체는 이용요금의 30%, 3시간 이하 지체는 50%, 3시간 초과 지체는 추가징수
5. 숙박시설의 기준인원은 다음과 같다.
  - 독립형 : 4인
  - 숲속체험관 : 4~6인 (성인4, 청소년이하 2)

## 신 · 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p>제7조(입장료 등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별표1의 입장료를 감면할 수 있다.</p> <p>1. 면제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군민, 강원도명예도민, 출향강원도민, 숙박시설 또는 강당 등 유료시설 사용을 목적으로 입장하는 사람</p> <p>2. ~ 3. (생략)</p> <p>제13조(관리·운영의 위탁 등) ① <u>군수는 휴양림의 관리·운영상 필요한 경우 휴양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격요건을 갖춘 법인·단체에게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u></p> <p>② (생략)</p> <p>③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는 시설물의 관리·운영에 소요되는 공공요금·시설유지관리</p> | <p>제7조(입장료 등의 감면) ① -----<br/>-----<br/>-----<br/>-----.</p> <p>1. -----<br/>-----<u>제9조의7</u>-----<br/>-----<br/>-----<br/>-----<br/>-----</p> <p>2. ~ 3. (현행과 같음)</p> <p>제13조(관리·운영의 위탁 등) ① <u>군수는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라 휴양림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휴양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격요건을 갖춘 법인·단체에게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u></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br/>-----<br/>-----</p> |

비 등의 비용은 수탁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하며, 수익시설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부과한다.

제19조(예산 및 운영의 지원) 군수는 시설물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수선비와 운영비 일부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수탁적격자 심사위원회)

① 군수는 수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평창군 수탁적격자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간사는 자연휴양림 업무관련 담당주사로 한다. <단서 신설>

-----  
-----  
----- 부과할 수 있다.

제19조(예산 및 운영의 지원) ---  
-----  
-----  
-----  
---운영비 등을 -----  
-----.

제20조(수탁적격자 심사위원회)

① 군수는 수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평창군 자연휴양림 수탁적격자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  
-----  
-----  
----- 담당팀장으로 ---.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